

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요건이 어떻게 되나요?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재학 중 <mark>총 2회</mark> 이상 이수해야 하며, <mark>2학년부터 4학년 사이</mark> 이수가 가능합니다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한 학기에 2회 이수가 불가능합니다. (매학기 이수 가능)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Α

 \bigcirc

Α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은 '학생종합정보시스템'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, 매학기 학사공지 또는 교직홈페이지, 학과사무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▶ 학생종합정보시스템〉 수업업무〉 교직업무〉교직응급처치 신청

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
Α

 \bigcap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론교육(1시간)*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, 실습교육(2시간)에서는 직접 응급처치 또는 심폐소생술을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. *이론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

실습교육 시, 연습용 마네킹(애니)의 수량이 제한되어 분반 형식(장소 나뉨)으로 진행됩니다.

(에시)

이론교육은 사범대강당에서 집합으로 실시 후,

실습교육을 위해 일부 학생들은 다른 지정된 장소 이동하여 실습교육 이수

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기간 내에는 '학사정보시스템'에서 취소 및 시간 변경이 가능 합니다.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
Q	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Α	학년도 말 성적확인 기간 내 '학생종합정보시스템' 교직사정안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▶ 학생종합정보시스템〉 수업업무〉 교직업무〉 교직사정안내

Α



교직적성·인성검사는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?

교직적성·인성검사는 재학 중 <mark>총 2회</mark> 이상 이수해야 하며, <mark>3학년부터 4학년 사이</mark> 이수가 가능합니다. 교직적성·인성검사는 한 학기에 2회 이수가 불가능합니다. (매학기 검사 실시)

교직적성·인성검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교직적성·인성검사 신청은 '학생종합정보시스템'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은 매 학기 학사공지 또는 교직홈페이지, 학과사무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Α

Α

▶ 학생종합정보시스템〉 수업업무〉 교직업무〉 교직적인성 신청



검사장소는 사범대학 1호관 1204호에서 실시하며,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(사진포함)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



Α

Q

Α

Α

교직적성·인성검사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?

교직적성·인성검사 신청기간 내에는 '학사정보시스템'에서 취소 및 시간 변경이 가능 합니다.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
교직적성·인성검사 결과 및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
학년도 말 성적확인 기간 내 '학생종합정보시스템' 교직사정안내 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합니다.

▶ 학생종합정보시스템〉 수업업무〉 교직업무〉 교직사정안내



교직적성·인성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나요?

Q

Α

 \mathbf{O}

Α

검사를 신청한 회차(시간)에 지정된 장소에서 신분 확인 후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〈수업- 교직업무- 교직적성 ·인성검사〉에서 검사 실시가 가능합니다. 문제는 4지 선다형 총 50문제로 약 10분 내외 소요됩니다(개인별 소요시간 상이).

교직적성·인성검사 결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교직적성·인성검사 부적격자의 경우 당해 학기 보충교육을 실시한 뒤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 (부적격자 보충교육 일정 개별 통지)



Q

Α

 O

Α



성인지교육은 꼭 이수해야 하나요?

네.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성인지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이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매학년도 1회 이수가 원칙!! ◆ <mark>사범대학생</mark>의 경우, 졸업 전 <mark>4회</mark> 이수

◆ <mark>일반대학 교직과정생</mark>의 경우, 졸업 전 <mark>2회</mark> 이수

성인지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·학교(대학 포함)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및 이외 양성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이수 시 성인지 1회





성인지교육 이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성인지교육은 "1~5차시 대면+온라인 교육"을 모두 이수하여야 〈성인지교육 1회〉이수로 인정됩니다. 대면교육의 경우는 대면참석 + 교육수강 / 온라인교육은 동영상강의 100% 이수 및 퀴즈나 설문조사(있는 경우)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
Q

성인지교육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А

Α

성인지교육은 대면강의 신청자를 기준으로 온라인교육은 자동 이수가 가능하며, 신청은 '학생종합정보시스템'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매 학기 학사공지 또는 교직홈페이지, 학과사무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▶ 학생종합정보시스템〉 수업업무〉 교직업무〉 교직성인지교육 신청



Α

Q

Α



성인지교육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?

성인지교육(대면) 신청기간 내에는 '학사정보시스템'에서 취소 및 시간 변경이 가능 합니다.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
성인지교육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
성인지교육 이수 여부 확인은 학년도 말 성적확인 기간에 '학생종합정보시스템' 내 교직사정안내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합니다.

• 학생종합정보시스템> 수업업무> 교직업무> 교직사정안내 성인지교육 이수 횟수 확인



성인지교육을 2학기에도 이수 할 수 있나요?

성인지교육은 1학기 이수가 원칙이나,

Α

부득이한 사정 또는 편입생을 대상으로 2학기에 추가 이수가 가능합니다.

다만, 이는 매학년도 교육계획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따라서 가급적 매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, <u>졸업전까지 이수 횟수 미충족으로 인한 교원자격증 미발급</u>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개인별 교직사정안내에서 본인 교직 이수 요건을 상시 확인







1학기때 성인지교육 일부만 이수하여 최종 미이수된 경우, 2학기때 다시 1~5차시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나요?



네. 1학기와 2학기는 교육이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1학기때 1~5차시 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여 최종 미이수처리 된 경우 2학기 성인지 1~5차시 교육을 모두 다시 이수하여야 됩니다.

다만, 재학생 법정의무교육인 <폭력예방교육*>이 1, 2학기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, 1학기 선이수자는 재수강 하지 않아도 됩니다. *스마트LMS 내 비정규과목



Q

Α

이외 교직필수과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교직필수과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직 대표메일(<u>teaching@daegu.ac.kr</u>)로 발송해주세요. 확인 후 순차 회신 드리겠습니다.

QNA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메일 작성 요령 엄수>

[제목] [교직필수과정-000*관련 문의] *성인지/응급/적인성 중 택 기재 [내용] 학번, 이름 기재 후 문의내용 기재 후 메일 발송